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 반 대 결 의 안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욕구로 30년만에 쟁취한 지방자치 제도를 이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한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싹이 이땅에 조금씩이나마 움틔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행태는 자라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새싹에 거름과 물을 공급하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채 오히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하고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미명아래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월하순경 국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기능약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기 설치된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내용인바

본회의장에서는 사실상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항에 착안하여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 제2항 제5호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조항, 동법 제35조 제1항에 “조례의 제정 및 폐기,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등”이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파생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와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가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통제하에 집행기관 내부에서 기능의 분화를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졸속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동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 공감할 수 있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권한도 지방의회로 귀속시키는 참된 지방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만약,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릴 경우 125만 대전광역시민과 더불어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강력한 연대투쟁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결 의 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의 자주성확보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별도로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 해오면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해 오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역행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차제에 현행 잘못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위상을 분명히 재정립 함으로써 지방자치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우리는 동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교육에 관한 문제가 지방정부의 주체인 주민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망각하고 교육의 전문성 제고만을 빙자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현재의 기도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2중으로 심의·의결토록한 현행 2원화된 교육자치체계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내 교육상임 위원회로 존치하여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의·의결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중복심의의 폐단을 해소하고 교육위원

회에 소속된 의사국 폐지에 따른 예산·인력과 시간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작은 정부의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교육감의 선출방식도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여지를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995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동